

대구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1나202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국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상철

피고, 항소인 1. B조합

2. C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11.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가합10017 판결

주 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조합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2018. 1. 4. 접수 제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272,931,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조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 C의 항소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것으로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 B조합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5행, 제9쪽 밑에서 제5행의 각 ‘피고’를 ‘피고 조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조합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사공민, 판사 정신구

별지

목록

경북 영양군 M건물 N동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99.92㎡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일반창고 162㎡. 끝.

